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1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. 11. 4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1. 10) 상정 보류

○ 제8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1. 1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복지과장 윤형식)

개정이유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한 융자대상자의 범위, 건전한 제정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신청 절차, 상환조건 등을 개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융자대상자 중 "생계가 곤란한 자"를 "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"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
○ 불법행위인 "노점"을 "소규모 점포"로 용어 개정(안 제3조제1항제1호)

○ 융자금의 제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건실 운영과 융자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 조정

•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상환 → 1년 거치 후 72개월 균등분할상환(안 제4조)

○ 새마을지도자, 통장 추천 생략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(안 제5조제2항)

○ 융자금의 강제회수규정 신설로 건전한 사업운영 도모(안 제6조제2항)

3. 질의답변 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제2조의 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을 없었는데 그 이유는?	○ 87년도에 제정된 사항으로 사실상 그런 기금이 없어 현실에 맞게 삭제하는 것임

- 노점을 소규모점포로 바꿨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?
- 소규모점포가 불법문제로 철거될 우려는 없는가?
-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생략한 이유는?
- 2년 간 융자한 실적이 80여 명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 그 이유가 제5조제1항의 재정보증서 첨부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?

- 시 정책이 노점을 없애기 때문에 용어만 소규모점포로 개정하는 것임
- 융자에 관한 사항이므로 거기까지는 예측하기가 곤란하며 영세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 조례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함
- 지금은 예전처럼 통장의 주민관리가 미약하기 때문이며 동장의 추천을 받고 있음
- 재정보증을 없앨 수는 없으며 신용보증으로의 대체문제를 검토해 보겠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01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한 융자대상자의 범위,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융자금 신청절차, 상환조건 등을 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 중 “생계가 곤란한 자”를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”로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불법행위인 “노점”을 “소규모 점포”로 용어 개정(안 제3조제1항제1호)
-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라 기금의 건설 운용과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거치 및 상환기간 조정
 -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상환 → 1년 거치 후 72개월 균등분할상환(안 제4조)
- 새마을지도자, 통장 추천 생략으로 신청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절차 간소화(안 제5조제2항)
- 읍·면·동 주민자치회 강제회수규정 신설로 건전한 사업운영 도모(안 제6조제2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 중 “영세민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영세민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”로 하고 “관리능력”을 “관리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”를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중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 중 “노점”을 “소규모점포”로, 동조제2항의 “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3년 거치 후 48개월”을 “1년 거치 후 72개월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, 통장, 동장의”를 “거주지 동장의”로 한다.

제6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.

1.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
2. 융자를 받은 자가(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)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

제7조 중 “시정조정위원회(구에서는 생활보호위원회)”를 “시정조정위원회(구에서는 구기금관리심사위원회)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영세민”을 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전입금 독지가의 성금, 찬조금, 기부금, 상환금”을 “전입금, 상환금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영세민업무담당국장, 영세민업무담당과장, 영세민업무담당주사”를 “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국장,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,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”로 하고, 동조제4항 중 “영세민업무담당과장, 영세민업무담당주사”를 “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,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,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설치와 관리능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부천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. 다만,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성금, 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융자대상)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행상,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(생략) <p>②제1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,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인문계</p>	<p>부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<u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</u></p>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.</p> <p>제3조(융자대상) ①.....<u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</u> 중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<u>소규모점포</u>.....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 <p>②..... <u>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</u>.....</p>

고등학교 30% 이내, 실업계 고등학교는 50% 이내인 자로 하고, 대학생은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(평균 "B"학점 이상)인 자로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.

③(생략)

제4조(융자금액 등) ①(생략)

②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7,000,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.

③ 및 ④(생략)

제5조(신청절차) ①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새마을지도자, 통장,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및 ③(생략)

제6조(융자금의 상환 등)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(신설)

제7조(심사위원회) 기금운영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(구에서는 생활보호위원회)가 이를 대행한다.

.....
.....
.....
.....
.....

③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융자금액 등)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
.....1년 거치 후 72개월.....
.....

③ 및 ④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신청절차) ①.....
.....거주지 동장의.....
.....
.....

② 및 ③(현행과 같음)

제6조(융자금의 상환 등) ①.....
.....
.....
.....

②구청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점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
- 2. 융자를 받은 자가(학자금 융자의 경우 보호자 포함)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

제7조(심사위원회)
.....시정조정위원회(구에서는 구기금관리심사위원회).....

제8조(특별회계의 설치)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.)를 둔다.

제9조(세입, 세출)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, 독지가의 성금, 찬조금, 기부금, 상환금,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10조(기금운용관) ①(생략)

②기금운용관은 시의 영세민업무담당국장, 기금분임운용관은 시의 영세민업무담당과장, 기금출납원은 시의 영세민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③(생략)

④분임기금운용관은 구의 영세민업무담당과장, 분임기금출납원은 구의 영세민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
제8조(특별회계의 설치)
.....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.....
.....

제9조(세입, 세출) ①.....
.....전입금, 상환금,.....
.....

제10조(기금운용관) ①(현행과 같음)

②.....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국장,.....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,.....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.....

③(현행과 같음)

④.....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과장,.....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.....